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2. 20. 기획행정위원장

나. 상정일자 : 제166회 제2회 정례회 제5차(2011.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수민 위원

나. 대안의 제안경위

-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19일 구미시장이 제출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난 1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보류하여,
- 타시도 조례안을 검토하고 몇 차례 위원들 간 심의를 한 결과, 구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하여 조례안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구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대안의 제안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 위원수와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원안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제안함.

다. 대안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시장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주민의 의견수렴 공개(안 제7조)

- 시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공개하여야 함.

○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 ~ 제13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지역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
- 위원회는 주민의견 심의, 예산편성 의견제출, 예산정책토론회 주관 등의 기능을 수행함. 단,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심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회의 공개의 원칙 (안 제15조)

-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안 제18조)

-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운영, 정책수립, 연구개발,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시민단체관계자, 시의원 등을 위원(20명 이내)으로 하는 연구회를 둬.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안 제19조)

-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없 음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6. 소 수 의 견 : 생 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